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과제

김상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선임연구위원
skkim@kiep.go.kr

박인원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iwpark@korea.ac.kr

박순찬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spark@kongju.ac.kr

임경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연구원
kslim@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최근 APEC은 역내에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APEC의 창설이념인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건설’의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역경제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음.
- REI는 APEC이 추구하는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무역을 왜곡시키는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행함으로써 APEC이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경제공동체 창설의 기반과 환경 조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음.
- 2007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REI 보고서는 역내 자유무역협정 확산의 결과 파생된 스파게티볼 현상이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축소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역내 원산지규정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조화 방법을 발굴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REI 강화 보고서에서 제시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상과 각료들의 지시사항은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책임 아래 이행을 도모하고 개선결과를 연례 정상회의에 보고하고 있음.
- APEC 정상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아·태 경제공동체의 결성으로 기대되는 무역창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 누적방식에 대한 원칙정립과 함께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APEC 차원의 조화 및 간소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APEC은 2008년 원산지규정에 대한 FTAs/RTAs 표준모델 제정을 기점으로 비특혜원산지규정의 품목별 조화방안,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한 분석, WCO 규정과의 조화문제, 관세 및 원산지규정 관련 웹(WebTR) 구축과 운영에 관한 논의를 집중하고 있으나 원산지규정 운용 및 활용의 기술적인 어려움과 회원국들의 입장 차이로 이행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APEC 결성의 궁극적인 목표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 결성에 대비하여 역내외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의 특성을 검토하고, 경제통합의 효과 배가를 위한 원산지규정 조화 및 통합 방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며 이행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추진됨.
-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고찰하거나 기존 지역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APEC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전무한 형편임.
- 2010년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에 대한 구체적 전개방안(sectoral approach 또는 ASEAN+3, ASEAN+6, TPP 등과 같은 기존 역내 RTA 활용 등)이 제시됨에 따라서 APEC 내 소지역주의에 대한 원산지규정의 조화 및 통합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TO 중심의 다자, ASEAN, EU, NAFTA 등의 양자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산지규정 현황을 검토한 이후 APEC 원산지규정 협력이 어떠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봄.

-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APEC 원산지규정 협력과제를 제시하고 이 중 가장 현실적이고 정량분석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시나리오에 의거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중력모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APEC이 하나의 경제통합체로 결성될 경우를 대비한 역내 FTAs/RTAs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누적효과 분석과 함께 미소기준 및 자율증명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의 비용적 측면에 대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원산지규정과 자유무역협정

- WCO 중심으로 진행되는 다자차원의 원산지규정(비특혜원산지규정)은 복잡다기한 특혜원산지규정에 비해 보다 일관성 있고 예외가 적은 통일된 ‘일반규정(general rules)’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경제통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누적기준에 대한 논의는 통일원산지 의제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미소기준 적용은 국가별 이견이 많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반면에 지역 차원의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으로 역내에는 주로 양자누적을 적용하고 역외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배타적인 구조를 특징으로 함.
- NAFTA와 EU는 체약국들의 매우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지만 역내국에는 행정비용의 증가, 역외국에는 무역전환 효과 등 무

역왜곡 효과를 발생시킴.

- 이와 같은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최근 지역 차원의 원산지규정은 다소 신축적이며 유연한 구조를 지향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음.
 - 일례로 ASEAN, P4의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면, 역외재료 최대허용비율인 미소기준은 10% 수준, 누적 기준은 40~50%로 상향되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체결된 역내 FTAs/RTAs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에서 복잡한 예외 규정을 화시키고 일관성 있는 규정으로 전 품목에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제공하는 유연성을 도입하는 특징을 보임.

2)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 1990년대 후반부터 심화되고 있는 아·태지역의 스파게티볼 현상은 자유무역의 특혜 부여 판정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지불 증가로 귀착되어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음.
- 2007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REI 보고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확인절차에 따른 추가적인 무역비용의 발생은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축소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역내 원산지규정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조화 방법을 발굴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현재 APEC에서 진행되는 원산지규정 관련 간소화 작업은 1) 역내 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증 관련 유효기한, 신고서 면제 및 미소기준 적용 현황 파악 작업, 2) 원산지 자율증명제도의 확대 활동으로 대별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활동으로 구현되고 있음.

- 첫째, APEC은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통한 기업들의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해 ‘원산지 자율증명 선구자 이니셔티브(Pathfinder Initiative on Self-Certification of Origin)’의 이행과 동 이니셔티브에 다수 회원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미국 등 총 9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호주의 원칙과 자국의 법, 제도, 규정에 의거하여 FTA 체결 당사국과의 합의에 따른 자율증명제도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
 - 둘째, APEC은 시범적으로 냉장기기(HS 8418, 호주 주도), 약기류(HS 9201-9207, 호주 주도), 철강제품(HS 7210, 일본 주도), 자전거와 그 부품(HS 8712-8714, 대만 주도), 소비자용 전자제품 및 IT 제품에 대한 원산지규정 조화에 대한 품목별 분석작업을 완료하고 분석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셋째, 역내 기업인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APEC 회원국들의 최혜국대우 관세율과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FTAs/RTAs의 특혜관세, 원산지규정 등이 포함된 관세 및 원산지규정을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WebTR 구축 1단계인 회원국별 관련 영문 웹사이트를 링크시키는 작업을 완료하였음.
- 2011년 APEC 정상회의에 보고된 REI 강화활동 가운데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 무역거래비용 절감, 공급망 성과 개선, 중소기업 무역장벽, 비즈니스 환경개선사업(EoDB) 분야는 원산지규정 논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 2011년 APEC 정상회의에서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글로벌 생산망 참여 촉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통관절차 간소

화 및 무역원활화 활동의 강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의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한 APEC 차원의 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3) 원산지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원산지규정과 무역비용 간 연관관계를 이론적 고찰과 기존의 실증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차적으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원산지규정 조화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음.
-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을 각각의 원산지 누적조항에 따라 양자누적, 유사누적 및 완전누적으로 구분하고, 이들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표준패널데이터 분석모형과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PPML)을 적용하였음.
 - 분석결과 표준패널데이터 분석방법에서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 양자누적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과의 무역이 11.5%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완전누적조항을 선택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60.5%로 나타나 완전누적이 훨씬 더 큰 무역창출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음.
 - 또한 표준패널데이터 분석모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와 이분산 편의(heteroskedasticity bias) 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antos Silva and Tenreyro(2006, 2009b) and Magee(2008)에 따라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PPML)를 따른 임의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표준패널데이터 분석모형에 비해 누적조항별 지역무역협정의 계수 값은 모두 작게 나타나 양자누적을 적용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3%에 그치고, 유사누적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 간 교역은 5.5%, 그리고 완전누적을 적용한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18.8%로 가장 크게 나타났음.

-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PPML)의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모형에서도 계수 값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완전누적의 무역창출효과가 유사누적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반면 비회원국과 무역이 감소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는 추정 결과도 도출되었는데 무역전환효과가 가장 큰 것은 유사누적을 적용한 지역무역협정이고, 그 다음이 양자누적 그리고 완전누적의 무역전환효과가 가장 작게 나타났음.

- 미소기준의 허용 여부와 기관증명 및 수출자 자율증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모형에서 미소기준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이 그렇지 않은 지역무역협정에 비해 회원국 간의 무역이 22.4% 더 많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 PPML로 추정된 모형에서는 미소기준을 허용한 지역무역협정이 미소기준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무역협정과 비교하여 회원국 간의 무역이 6.8% 더 많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 이는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 이외에 미소기준을 허용함에 따른 추가적인 무역창출효과가 6.8%에 달한다는 것을 나타냄.

- 한편 원산지증명방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수출자 자율증명의 계수 값은 기관증명 방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도출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수출자 자율증명을 채택한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가로 수출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서류와 엄격성을 요구함으로써 수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3. 정책 제언

- 지난 20년 가까이 추진되어온 APEC의 경제통합활동은 역내외 정책변수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인지되고 통합의 초기 단계에서 미미하였던 원산지규정에 대한 활용도 역시 제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음.
- 초기 단계의 APEC 경제통합과정에서 관세인하를 중심기제로 활용한 APEC 경제통합 활동은 2001년 상하이합의 이후 무역원활화의 중요성 부각, 2005년 부산로드맵(Busan Roadmap)에서 합의한 무역거래 비용 5% 절감 목표 달성, 2009년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공급망 강화 실천, 차세대 무역투자이슈의 발굴 등 국경간(cross the border), 국경내(behind the border), 국경(at the border)에서 발생하는 교역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교역환경 개선 및 원활화 조치에 특화되어 진화되고 있음.
- 특히 2011년 11월 정상 및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지역통합강화사업과 관련한 제반 활동과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달성되기 위해서는, 향후 APEC 경제통합활동에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조화 및 간소화를 이룩하고, FTAAP과 같은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경제적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보다 고도화된 실행전략이 포함된 원산지규정 활용방안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같이 APEC에서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논의방향은 향후 APEC 경제통합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정성적·정량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APEC 원산지규정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행을 위한 다음의 네가지 정책을 제언함.

1) WebTR의 정보 확산 기능강화

- TPP를 비롯한 역내 FTAs/RTAs의 확산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보호주의적 요인과 비용 상승 요인을 경감시키면서, APEC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의 조화와 이에 따른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다 기업친화적인 정책 환경 조성이 요망됨.
- 최근 역내 FTAs/RTAs의 확산과 스파게티볼 현상에 대한 우려, 역내 교역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제고된 상태이지만, 아직도 다수 APEC 회원국들과 역내기업인들에게 원산지규정은 그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타 정책수단에 비하여 그 활용도가 낮은 실정임.
- 최근 APEC에서 구축된 WebTR은 역내기업인에게 회원국들의 통관절차, 관세 및 원산지규정 관련정보를 링크하여 제공함으로써 원산지규정 활용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만,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만을 링크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APEC 차원에서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APEC 원산지규정 종합 정보센터’의 기능을 WebTR이 담당해야 할 것임.
- 1997년에 제정된 ‘Compendium of Rules of Origin’의 개정판 수록과 수시 갱신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역내 특혜원산지현황 점검기능이

추가될 경우 역내기업인들이 TPP를 포함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역내 FTAs/RTAs 원산지규정 정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이 가능해짐으로써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역현장에서 활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지난 20년간 APEC의 경제협력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한 원산지규정 관련 활동 및 사업에 대한 stocktaking, 평가, 분석 작업을 MAG 주도로 실시하여 APEC 원산지규정 활동의 현 좌표를 점검하고 향후 원산지규정 작업계획 마련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며 그 내용을 WebTR에 등재하여 정보의 활용과 함께 APEC 원산지규정 운용의 예측성 및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2) 원산지누적 방식도입

- 지역무역협정의 목적이 회원국 간의 교역을 촉진하여 후생을 증진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기업 및 산업의 요구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 원산지규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APEC 역내에서 체결된 많은 지역무역협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기대되는 무역창출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지역무역협정별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는 원산지규정을 조화하고 간소화하는 노력이 매우 시급함.
 -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기업이 지역무역협정의 혜택을 포기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정책입안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환경적인 요인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FTAs/RTAs가 채택하고 있는 양자누적에 비해 완전누적과 유사누적의 경제적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 바 이를 반영하기 위한 APEC의 제도적 경제통합(FTAAP)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APEC의 제도적 통합에 대비하여 범유럽누적시스템(PECS)과 유사한 범아·태누적시스템(PAPCS)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그러나 현재 APEC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산지규정 관련 논의는 다수 회원국들이 복수의 FTAs/RTAs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원산지규정에 따른 국별 이해득실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21개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용이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APEC은 정책대화, 분석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유사, 완전 누적 방식의 경제적 혜택과 수반되는 도전 요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ASEAN, NAFTA, TPP 등 역내 RTAs의 경험에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APEC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임.

3) 원산지증명 발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유사성 증진 및 제도 개선작업 강화

-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조화와 간소화에 대한 미소기준을 채택한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와 함께 기관증명과 자율증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음.

- 현재 APEC에서 ‘원산지규정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기 제도들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매우 의미 있는 무역증진 효과를 창출하는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는 사업임을 증명하였음.

- 원산지규정이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의 판정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지만, 엄격성에서 파생되는 비용상승 요인이 원활한 국제무역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APEC을 위시한 다수의 지역협력체에서 원산지규정의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APEC 회원국 간 체결된 42개의 FTAs/RTAs 가운데 31건이 미소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2009년 원산지 자율증명 선구자 이니셔티브 사업 착수 이후 한국을 비롯한 9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 미소기준의 경우 미소기준 상향조정과 비참여 FTAs/RTAs에 대한 제도의 확대적용, 자율증명제의 경우 회원국참여확대를 통한 효과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양제도 공히 운용과정에서 해당 회원국의 법, 제도, 규정에 따라 적용의 신속성과 엄격성이 가름되는 특징을 나타냄.

- 기관증명과 자율증명에 대한 무역효과를 추정한 결과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기관증명의 확대가 의미 있는 무역증진효과를 창출한다는 추정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에 반하여 자율증명의 확대가 무역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실한 인과관계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음.

-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공신력이 인정된 기관증명서 발급과는 달리 자율증명서 발급절차가 국별로 상이할 뿐 아니라 엄격한 법 또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증명제 활용의 유익이 반

감되는 현상을 APEC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시각에서 조명할 경우 2011년 각료회의에서 ‘규제협력 및 수렴’ 원칙이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더불어 합의된 사실은 원산지규정의 조화 및 간소화 촉진을 위한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고 판단됨.
- 한국은 자율증명제도 참여와 함께 원산지판정 분야에서 사전판정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APEC 원산지규정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국가로 이미지를 굳히고 있음.
- 한국은 사전판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판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 종류와 양식의 통일기준마련을 주도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자율증명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모범사례를 회원국과 공유함으로써 역내 기업들의 교역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APEC 능력배양사업 활성화를 통한 원산지증명 조화 및 간소화 촉진

- 현재 APEC에서 이행 중인 원산지규정의 조화와 간소화 사업의 다수는 국내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을 요구할 뿐 아니라 무역원활화를 비롯한 관련 사업과 밀접한 협조를 통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범분야적(cross cutting) 이슈를 다수 포괄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APEC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원산지규정 논의에 다수 회원국 참여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인 경제통합의 준비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을 논의하고 이행을 위해서는 많은 도전과제들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능력배양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원산지규정의 조화 및 간소화를 위해서는 현재 APEC의 산하 협의체 별로 추진되고 있는 기존의 능력배양사업과 시너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원산지관련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됨.
- 지난 2010년부터 한국은 회원국들이 FTAAP을 포함한 APEC의 경제통합 강화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역내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수요 이니셔티브(REI 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를 제안하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능력배양 대상 분야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 수요조사 결과 회원국들은 지식재산권(80%), 투자(75%), 원산지규정(65%) 이 순조로운 FTAs/RTAs 협상을 위해 능력배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임을 밝혀냈음.
-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CBNI 사업은 2012년부터 약 5개년에 걸쳐서 추진이 예정되고 있으며, 원산지규정의 능력배양사업 전개를 통해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원산지규정 활용도 제고는 물론이고 APEC에서 추진되고 있는 원산지규정 조화 및 간소화 사업의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성공적인 능력배양사업을 위해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자원확보가 관건임.
- 김상겸 외(2010)의 주장과 같이 자원확보는 한국정부의 ODA 지원규모 증액(ODA/GNI 기준 2006년 0.05% → 2015년 0.25%)의 일정부분을 CBNI 사업에 할당하거나 경제통합의 최종수혜자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차원에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APEC 경제통합의 혜택을 공유하고 한국정부 및 참여기업의 브랜드가치를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